

## 제3기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군 선정(안) 및 가이드라인 작성

한 상 욱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hansw@cni.re.kr

임 형 빈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hbyim@cni.re.kr,

이 연구는 2018년부터 새롭게 추진될 제3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대상 시군과 시군의 제안서 작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CONTENTS

1. 제1,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개선 과제
2.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안)
3.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4. 제안서 작성 방법

### 요약

- 충청남도는 천안아산 등 경부축 중심, 북부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서남부권의 상대적 저성장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지원된 사업은 2017년에 2기에 걸쳐 마치게 되고, 2018년부터는 제3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바, 제3기 사업의 추진방향, 지원분야,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방식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이 연구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여야 하는 바, 실무적(행정적)으로 가장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내용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제1,2기사업의 개선과제 검토, 조례상 지표에 의거한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안),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지원 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방식, 추진절차 등을 제시함
-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원하는 해당 시군이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발전수준 진단, 사업발굴추진 고려 사항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맞춘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제시하였음



# 01

## 제 1,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개선과제

### 1. 추진배경 및 지원 규모

- [배경] 충청남도는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권과 경부축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서남부권의 상대적 저성장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전역의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07. 3.30)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 규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여, 지특 도 배정액( 시도자율계정)의 10%,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8개 시군을 지원하였음
  - 제1,2기 사업에는 122개 지구, 855,640백만원 지원
  - 국비 227,744백만원, 도비 270,770백만원, 시군비 283,703백만원, 기타 73,423백만원 지원

### 2. 제 1,2기 사업의 개선과제

- [찾은 사업 변경] 전체 136개 사업 71%가 사업 변경
  - 사업비 증가사업 29개, 사업비 감소 사업 30개 사업
  - 중도 포기한 사업 13개 사업
  - 신규 사업 24개 사업
- [사업효과의 확산 미흡] 관광부문 및 시설 중심의 사업 추진

- 산업경제 242,017백만원(28.3%),      - 관광 377,072백만원(44.1%),
  - 인프라 71,214백만원(8.3%),      - 역사문화 47,579백만원(5.6%),
  - 체육복지 87,546백만원(10.2%),      - 기타 30,212백만원(2.5%)
- [성과목표 미제시] 계획상 사업의 성과 창출을 고려한 성과목표 미제시로 효과 측정 어려움
    - 개발계획상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 미제시되어 있고,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시에 사업 효과 측정에 한계
  - [사업 선정의 객관성 미흡] 시·군의 균형발전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미확보
    - 사업 총괄부서가 사업부서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증 미흡
    - ※ 검증절차를 운영하더라도, 시장·군수의 요구시 제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 사업 발굴 및 선정시 관련 지역균형발전 전문가의 자문, 컨설팅 全無
    - 형식적인 도의원 의견 수렴,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주민의 의견 수렴은 全無
    - 마스터플랜 미제시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의 위상, 단계 등의 파악 어려움
  - [수요 및 타당성 부족] 계획내용 중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
    - 사업 성패의 결정적 요인인 도입 기능·시설 규모, 프로그램, 인력 등에 대한 내용 全無
    -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잦은 사업 변경, 사업관리 체계의 개선 요구
    -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관성, 관련서비스 공급 실태, 유사시설의 검토,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적정성 등 미흡
    - ※ 대부분의 관광사업의 경우, 지역 대내외적인 여건, 유사시설 분포, 관광수요 예측 미제시
    - 계획 단계 중 경제성 분석(B/C, NPV, IRR 등), 재무적 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에 대한 효과성 미제시
    - 시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시행하는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부서에 업무 이관 후 사업을 세분하여 시행(“일명, 사업 쪼개기”)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 절차 우회
  - [운영관리 대안 미흡] 계획내용 중 사업추진체계,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내용 개선 요구

- “누가 추진할 것인지?” 에 대한 사업 추진체계, 주체별 역할 제시 필요
  - 명확한 추진체계 설정에 따른 민간 등 참여자 확보, 실행조직 역량강화는 全無
  - 건축물,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조직체 운영 등에 대한 내용 全無
- [시설 중심의 사업] 대부분이 Hardware중심으로 구성되어, Software, Humanware 복합화 요구
    - 사업 추진체계, 주체별 역할 미흡, 특히, 사업총괄부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
    - 명확한 추진체계 설정에 따른 민간 등 참여자 확보, 실행조직 역량강화는 全無
    - 건축물,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조직체 운영 등에 대한 내용 全無
- [총괄부서(팀)의 역할 미흡] 총괄부서(팀)의 기획·계획·관리 미흡,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평가에 대한 개선 요구
    - 총괄부서의 사업 기획 - 발굴 - 계획 - 시행 - 운영 등 전과정을 리딩(leading) 미흡
    - 사업 추진 중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역할 분담 및 관리 감독 체제 설정 미흡
 ※ 일반적으로 사업 발굴, 사업비 확보만 총괄부서(팀)에서 추진, 사업시행-운영은 사업부서 소관
- [도비지원사업의 역할 모호] 도비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연적 지원 강구 필요
    - 중단·종료되는 국비지원 H/W사업의 재정적 보완, 시장·군수 요구사업 시행을 위해 충당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
    - 시·군의 전략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조건 구비용으로 활용
    - 사업 회계별 배분비율 준수, 도비 지원사업의 차별성, 특수성 보완 필요
 ※ 사업유형별 도비 매칭 비율은 지특사업 : 순도비사업 = 61.4 : 38.6, 순도비 사업을 추진 하지 않고, 국비확보용으로 전환된 도비는 30,974백만원
- [실질적 추진체계 미흡] 사업 다양화에 따른 실질적인 맞춤형 추진체계 구축·운영 요구
    - S/W사업 추진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주체화 미흡(공공주도형)
    -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 구성 운영 및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주체화 지원 요구

- 대부분 사전 검증, 운영관리체계를 사업 시행 중 마련함에 따라 시군이 과도한 운영비를 지출
- 실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활동가 육성,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연계 등은 미흡
  
- [형식적인 모니터링·평가] 사업 변경 대비 실질적인 원인 규명 및 해소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추진 공정률 달성 미흡 등 모니터링·평가의 형식적 운영 개선
  - 평가 불감증, 후속 조치(인센티브, 패널티)에 대한 대안 마련 요구

## 02

#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시군 선정(안)

## 1. 분석 근거

-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각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매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조례 제3조 제1항)
-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 6개 지표(시행규칙 제3조 제1항)를 표준화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며, 성장거점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시군은 제외 가능(시행규칙 제3조 제2항)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는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산출한다.
2. 인구의 고령화가 심한 정도는 전년도 말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3.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정도는 최근 총사업체 종사자비율(사업체의 총 종사자수를 인구수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4.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한 정도는 최근 5년간 시·군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의 합을 기준재정수요의 합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5. 지역소득 수준이 낮은 정도는 최근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6.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한 정도는 최근 도로율(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개통도로의 연장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로 산출한다.

## 2. 지역발전 수준 변화

### 1) 종합점수

- 현재 적용 기준에 의한 균형발전대상지역의 변동은 없음
  - 종합점수 하락 시군 : 공주, 보령, 논산, 부여, 서천, 태안
  - 종합점수 증가 시군 : 금산, 청양
-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의 영향으로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

구분	당초		현재		증감		비고 (점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천안	12.60	1	8.30	2	-4.30	-1	
공주	-1.04	6	-2.17	10	-1.13	-4	하락
보령	-1.05	7	-1.51	8	-0.46	-1	하락
아산	7.58	2	12.01	1	4.43	1	
서산	1.86	4	0.99	5	-0.87	-1	
논산	-1.35	8	-1.41	7	-0.06	1	하락
계룡	4.75	3	2.25	4	-2.50	-1	
당진	0.52	5	4.37	3	3.85	2	
금산	-2.76	11	-1.82	9	0.94	2	상승
부여	-4.64	14	-5.21	15	-0.57	-1	하락
서천	-3.32	12	-3.75	13	-0.43	-1	하락
청양	-5.51	15	-4.47	14	1.04	1	상승
홍성	-2.66	10	-1.05	6	1.61	4	
예산	-3.50	13	-3.40	12	0.10	1	
태안	-2.14	9	-3.14	11	-1.00	-2	하락

주1) 기준년도 당초: 2007, 현재 : 2015(도로율은 2014)

주2) 당초의 연기군은 현재대비 제외

주3) 음영처리한 시군은 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임

## 2) 현재 지표별 결과

구 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중사자비율		재정력지수		주민세총액		도로율	
	점수	순위										
천안	0.83	4	-1.37	14	1.00	4	2.05	2	2.10	2	0.95	3
공주	-1.16	15	0.04	7	0.25	5	-0.48	11	-0.31	5	-0.43	8
보령	-0.37	8	-0.12	9	-0.53	12	-0.47	9	-0.46	7	0.19	5
아산	2.20	1	-1.30	13	2.01	1	2.55	1	2.71	1	1.25	2
서산	0.56	5	-0.89	12	0.01	7	0.32	4	0.47	3	-1.26	15
논산	-0.64	10	-0.00	8	-0.23	10	-0.41	7	-0.46	8	0.33	4
계룡	0.92	3	-1.46	15	-2.10	15	-0.24	5	-0.62	14	2.84	1
당진	1.77	2	-0.89	11	1.24	2	0.86	3	0.32	4	-0.71	12
금산	-0.56	9	0.54	6	1.08	3	-0.48	10	-0.44	6	-0.87	14
부여	-1.04	14	1.17	3	-1.27	14	-0.75	14	-0.54	12	-0.43	9
서천	-0.93	13	1.47	2	-0.19	9	-0.73	13	-0.59	13	0.16	6
청양	-0.67	11	1.70	1	-0.17	8	-0.94	15	-0.64	15	-0.36	7
홍성	0.04	6	-0.24	10	0.09	6	-0.46	8	-0.50	9	-0.46	11
예산	-0.72	12	0.73	4	-0.43	11	-0.56	12	-0.52	10	-0.44	10
태안	-0.23	7	0.62	5	-0.77	13	-0.24	6	-0.52	11	-0.76	13

### 3. 지원대상 시군 선정(안)

- [현행 조례 대비] 현 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한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적용시 지원대상지역의 변동은 없음
  -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시 표준화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
- [홍성·예산에 대한 해석]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 조성 효과로 인하여 전체적인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 한편, 예산군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종합순위는 12위로 1단계 상승함
  - 홍성 : 종합점수 당초 -2.66 → -1.05 / 순위 10위 → 6위
  - 예산 : 종합점수 당초 -3.50 → -3.40 / 순위 13위 → 12위
- 홍성군의 경우, 양(+)의 값으로 전환된 지표는 인구증가율(0.04), 종사자비율(0.09)로 향후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경제의 활성화시 그 증가세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
  - 홍성군 인구증가율 -0.34 (9위) → 0.04(6위) 증감 : +0.38(+3위)
  - 홍성군 종사자비율 -0.64(14위) → 0.09(6위) 증감 : +0.70(+8위)
  - 홍성군 재정력지수 -0.62(13위) → -0.46(8위) 증감 : +0.16(+5위)
- 예산군은 인구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역내 인구가 홍성군으로 유입된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내포신도시 인근 지역의 종사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며, 향후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의 본격적인 개발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예산군 인구증가율 -0.63(12위) → -0.72(12위) 증감 : -0.09( - 위)
  - 예산군 종사자비율 -0.51(11위) → -0.43(11위) 증감 : 0.08( - 위)
  - 예산군 재정력지수 -0.53(12위) → -0.56(12위) 증감 :-0.03( - 위)

# 03

##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 1. 기본 방향

조례에서 규정된 “경쟁력” 과 “삶의 질 향상” 목적하에  
장소의 번영보다는 사람의 번영으로 전환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 정착

기조 : 균형발전의 개념 확대 : 나눔, 분배 → 경쟁력 강화 + 기회의 균등 보장

-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균등화 전략은 일시적이며, 한계에 봉착
-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특성화 발전을 통한 잉여가치의 창출로 전환 → 창조산업과 지역특화경제 육성으로 전환

사전적인 기회의 보장 : 자율, 경쟁, 특성화, 혁신

-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은 불합리성에 대한 교정적 균형을 의미(결과의 균등)
- 자율적인 지역발전 역량 제고 + 지역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발전 추구

지역 융성을 위한 영역적 발전 도모 : 지역, 공유, 공동체

- 살기 좋은 토대 마련, 지역 가치의 발굴, 지역 특성화 및 선순환 구조의 구축
- 지역자산을 브랜드화 하여 성장동력 창출 + 창조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의 융성 도모

- 기초생활체의 발전 기초 마련 + 도시재생, 농어촌중심지 기능 고도화, 생활 문화공동체, 향토산업 육성,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활성화

※ 지역자산 및 기존 유희시설 활용의 가치 재창출하고, 지역 공동 홍보사업 추진

## 생산적·창조적 지역주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 정착 : 연대, 연계, 융합, 복합

- 지역내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
- 공간간, 물자간, 사람간, 조직간의 연계로 경쟁력 제고 및 자립 역량의 구축

## 2. 사업 지원 분야

### 1) 원칙

지역발전지수 세부지표상 전국 하위 30%에 속하는  
세부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2) 사업 지원 분야

#### (1) 공통사업 : 인구 증가 + 경제활성화 + 소득 증대

##### ① 체재교류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종합화 및 관련 분야간의 통합적 추진

- 귀농귀촌 인구 유입 적극 추진
- 기존의 외지인 유입 사업과 내지인 조출생률 제고

※ 인구유입 사업 추진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사업(의료, 복지 등) 동시 추진

##### ② 경제활성화

- 클러스터적 접근에 의한 전략산업, 특화산업의 종합적·전략적 추진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지역의 지탱분야인 농어업, 식량 중요성 제고 측면의 식량산업의 경쟁력 제고

- 산업(농공)단지 개발리모델링 및 분양률 제고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6차산업화, 경영 내실화, 판매 경로 확보·지원
- 소상공인의 창업활동 등 통합을 통합 지원(자금, 정보, 교육·컨설팅 등)
- 부처별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

③ 소득 증대(개인의 가처분소득 제고)

- 신규 창업률 지원확대 및 통합 추진
- 기존 사업체의 규모화, 경쟁력 강화(영업이익률 확대)

## (2)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서비스 제고

- 사군별 지역발전지수의 삶의 질 관련 지표 상 전국 30%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 교육문화복지 등 정주환경 개선 관련 사업
  - ※ 삶의 질 관련 사업은 앞의 공동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단독 사업 추진은 지양

## (3) 충청남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사업으로서 지역내 주민(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내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사업

### 3. 사업비 지원 방향

#### 1) 사업비 지원 현황

- 도비 기준, 10년간 평균사업비는 27,077백만원이며, 시군당 사업비는 3,384.6백만원임
  - 1기사업의 도비 기준 사업비는 28,360백만원, 시군당 3,545백만원임
  - 2기사업의 도비 기준 사업비는 25,794백만원, 시군당 3,224.3백만원임
- 최근 10년간 추세는 연평균 -2.299%로 사업비 감소 추세이며, 도비는 9.584% 증가 추세
  - 1기 사업 연평균 증감률 : 전체사업비 -6.660%, 도비 25.010%
  - 2기 사업 연평균 증감률 : 전체사업비 3.051%, 도비 2.246%

연도별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도비기준 시군당 사업비
년평균 사업비	1기+2기	83,725.3	22,774.4	27,077.0	28,370.3	5,503.6	3,384.6
	1기	89,055.8	26,706.4	28,360.0	27,818.6	6,170.8	3,545.0
	2기	78,394.8	18,842.4	25,794.0	28,922.0	4,836.4	3,224.3
추세 (연평균 증감률)	1기+2기	-2,299	-5,761	9,584	-0,120	-3,161	
	1기	-6,660	-6,416	25,010	-15,505	5,732	
	2기	3,051	2,006	2,246	5,583	-3,683	
1기	2008	96,810	29,200	29,200	33,245	5,165	3,650.0
	2009	103,158	29,200	29,200	40,659	4,099	3,650.0
	2010	84,894	26,600	27,200	22,674	8,420	3,400.0
	2011	83,108	26,140	27,200	21,418	8,350	3,400.0
	2012	77,309	22,392	29,000	21,097	4,820	3,625.0
2기	2013	73,210	17,771	26,575	24,646	4,218	3,321.9
	2014	76,995	18,202	25,625	27,425	5,743	3,203.1
	2015	77,584	19,654	19,873	31,765	6,292	2,484.1
	2016	81,091	19,700	28,897	29,192	3,302	3,612.1
	2017	83,094	18,885	28,000	31,582	4,627	3,500.0

주) 도비 기준 시군당 사업비는 도비/8임

## 2) 3년간 지원가능 사업비 검토

- 차등지원을 미고려한 도비 기준 연평균 사업비를 적용한 3년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1+2기 평균 도비 사업비 적용시 총사업비 243,693백만원, 도비 81,231.0백만원
  - 1기 평균 도비 사업비 적용시 255,240백만원, 도비 85,080백만원
  - 2기 평균 도비 사업비 적용시 232,146백만원, 도비 77,382.0백만원
- 차등지원을 미고려한 1개 시군당 3년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1+2기 평균 도비 사업비 적용 시군당 총사업비 30,461.6백만원, 도비 10,153.9백만원
  - 1기 평균 도비 사업비 적용 시군당 총사업비 31,905.0백만원, 도비 10,635.0백만원
  - 2기 평균 도비 사업비 적용 시군당 총사업비 29,018.3백만원, 도비 9,672.8백만원

### 지원가능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8개 시군				1개 시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1 년 간	1+2 기	계	81,231.0	27,077.0	27,077.0	27,077.0	10,153.9	3,384.6	3,384.6	3,384.6
		지특회계	54,154.0	27,077.0	13,538.5	13,538.5	6,769.3	3,384.6	1,692.3	1,692.3
		순도비	27,077.0		13,538.5	13,538.5	3,384.6		1,692.3	1,692.3
	1기	계	85,080.0	28,360.0	28,360.0	28,360.0	10,635.0	3,545.0	3,545.0	3,545.0
		지특회계	56,720.0	28,360.0	14,180.0	14,180.0	7,090.0	3,545.0	1,772.5	1,772.5
		순도비	28,360.0		14,180.0	14,180.0	3,545.0		1,772.5	1,772.5
	2기	계	77,382.0	25,794.0	25,794.0	25,794.0	9,672.8	3,224.3	3,224.3	3,224.3
		지특회계	51,588.0	25,794.0	12,897.0	12,897.0	6,448.5	3,224.3	1,612.1	1,612.1
		순도비	25,794.0		12,897.0	12,897.0	3,224.3		1,612.1	1,612.1
3 년 간	1+2 기	계	243,693.0	81,231.0	81,231.0	81,231.0	30,461.6	10,153.9	10,153.9	10,153.9
		지특회계	162,462.0	81,231.0	40,615.5	40,615.5	20,307.8	10,153.9	5,076.9	5,076.9
		순도비	81,231.0		40,615.5	40,615.5	10,153.9		5,076.9	5,076.9
	1기	계	255,240.0	85,080.0	85,080.0	85,080.0	31,905.0	10,635.0	10,635.0	10,635.0
		지특회계	170,160.0	85,080.0	42,540.0	42,540.0	21,270.0	10,635.0	5,317.5	5,317.5
		순도비	85,080.0		42,540.0	42,540.0	10,635.0		5,317.5	5,317.5
	2기	계	232,146.0	77,382.0	77,382.0	77,382.0	29,018.3	9,672.8	9,672.8	9,672.8
		지특회계	154,764.0	77,382.0	38,691.0	38,691.0	19,345.5	9,672.8	4,836.4	4,836.4
		순도비	77,382.0		38,691.0	38,691.0	9,672.8		4,836.4	4,836.4

주1) 도비기준 연평균 사업비를 적용, 차등지원 미고려

주2) 지특사업은 국비 : 지방비=5:5 적용

주3) 순도비사업은 도비 : 시군비 = 5:5 적용

**지특회계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설정(1년간 국비 200억원, 도비 300억원)**

### 3) 3년간 지원가능 사업비(안)-차등지원 미고려

- 최근 국·도비 지원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 3년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지원가능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8개 시군				1개 시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1년 간	계	80,000	20,000	30,000	30,000	10,000	2,500	3,750	3,750
	지특회계	40,000	20,000	10,000	10,000	5,000	2,500	1,250	1,250
	순도비	40,000		20,000	20,000	5,000	-	2,500	2,500
3년 간	계	240,000	60,000	90,000	90,000	30,000	7,500	11,250	11,250
	지특회계	120,000	60,000	30,000	30,000	15,000	7,500	3,750	3,750
	순도비	120,000	-	60,000	60,000	15,000	-	7,500	7,500

주1) 도비기준 연평균 사업비를 적용, 차등지원 미고려

주2) 지특사업은 국비 : 지방비=5:5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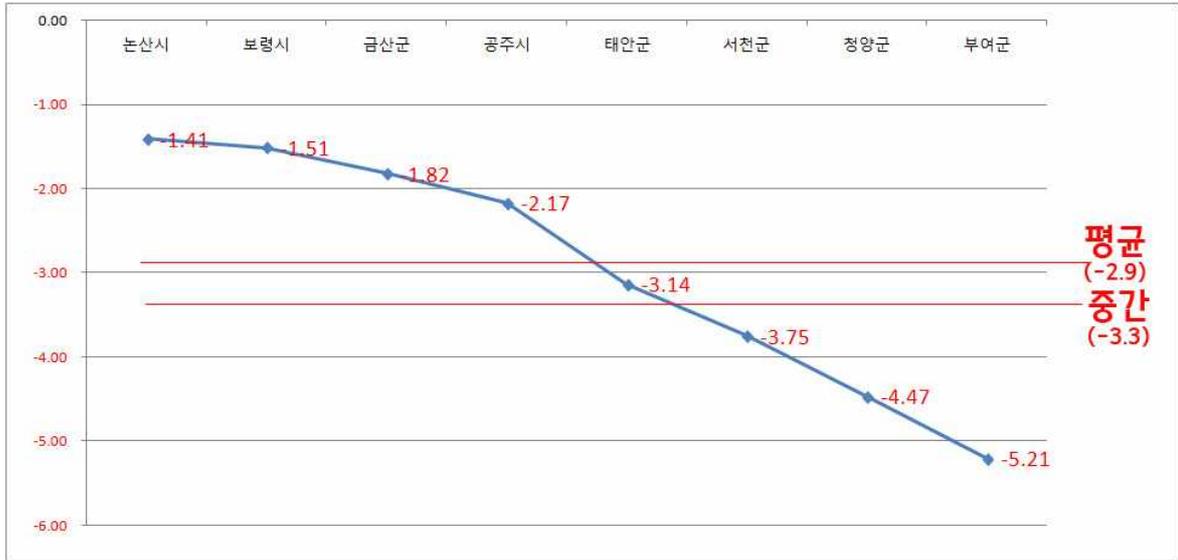
주3) 순도비사업은 도비 : 시군비 = 5:5 적용

### 4) 3년간 지원가능 사업비(안)-차등지원 고려

- 8개 시군을 균등배분, 평균기준 그룹평시 상위그룹 4개, 중위 2개, 하위 2개 시군으로 구분하고, 10%로 차등 적용
  - 상위 그룹 : 논산, 보령, 금산, 공주(Δ10%)
  - 중위 그룹 : 태안, 서천
  - 하위 그룹 : 청양, 부여(+20%)

#### 그룹핑 기준

구분	표준화점수	상위 격차	그룹핑	
			30%균등 배분	평균 기준
논산시	-1.41	-0.36	상	상
보령시	-1.51	-0.10	상	상
금산군	-1.82	-0.31	상	상
공주시	-2.17	-0.35	상	상
태안군	-3.14	-0.97	중	중
서천군	-3.75	-0.61	중	중
청양군	-4.47	-0.72	하	하
부여군	-5.21	-0.74	하	하
평균	-2.93	-0.52		
중간점	-3.31			
편차	1.43			



### 시군별 잠정사업비(안)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간 8개 시군			3년간 8개 시군			1년간 1개 시군			3년간 1개 시군			비고	
	계	지특	순도비	계	지특	순도비	계	지특	순도비	계	지특	순도비		
계	계	80,000	40,000	40,000	240,000	120,000	120,000	31,000	15,500	15,500	93,000	46,500	46,500	
	국비	20,000	20,000	-	60,000	60,000	-	7,750	7,750	-	23,250	23,250	-	
	도비	30,000	10,000	20,000	90,000	30,000	60,000	11,625	3,875	7,750	34,875	11,625	23,250	
	시군비	30,000	10,000	20,000	90,000	30,000	60,000	11,625	3,875	7,750	34,875	11,625	23,250	
상위	계	36,000	18,000	18,000	108,000	54,000	54,000	9,000	4,500	4,500	27,000	13,500	13,500	공주 보령 논산 금산
	국비	9,000	9,000	-	27,000	27,000	-	2,250	2,250		6,750	6,750	-	
	도비	13,500	4,500	9,000	40,500	13,500	27,000	3,375	1,125	2,250	10,125	3,375	6,750	
	시군비	13,500	4,500	9,000	40,500	13,500	27,000	3,375	1,125	2,250	10,125	3,375	6,750	
중위	계	20,000	10,000	10,000	60,000	30,000	30,000	10,000	5,000	5,000	30,000	15,000	15,000	서천 태안
	국비	5,000	5,000	-	15,000	15,000	-	2,500	2,500		7,500	7,500	-	
	도비	7,500	2,500	5,000	22,500	7,500	15,000	3,750	1,250	2,500	11,250	3,750	7,500	
	시군비	7,500	2,500	5,000	22,500	7,500	15,000	3,750	1,250	2,500	11,250	3,750	7,500	
하위	계	24,000	12,000	12,000	72,000	36,000	36,000	12,000	6,000	6,000	36,000	18,000	18,000	부여 청양
	국비	6,000	6,000	-	18,000	18,000	-	3,000	3,000		9,000	9,000	-	
	도비	9,000	3,000	6,000	27,000	9,000	18,000	4,500	1,500	3,000	13,500	4,500	9,000	
	시군비	9,000	3,000	6,000	27,000	9,000	18,000	4,500	1,500	3,000	13,500	4,500	9,000	

※ 다만, 균형발전 목적에 부적합 사업, 매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하여 사업비 증감 반영

## 4. 지원대상지역의 사업 발굴 및 제안서 검토 원칙

### 1) 사업 발굴 원칙

- [목적 부합성] 균형발전사업 취지에 적합한 주제의 선정 및 사업 발굴
  - 비전(Vision)-목표(Goal)-전략(Strategy)-사업(Program)-성과(Outcome)가 일체화
  - ※ 시장군수 현안사업, 백화점식 나열사업 제외
- [특성화자립화] 특성화와 지역 자원의 산업화로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이 가능한 사업 발굴
  -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산업화 전략을 추진
  - 클러스터적 접근, 문화·복지적 접근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종합적 구성 요구
- [삶의 질 제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의 발굴
  - 지역 진단에 의거한 주민 요구도, 주민 수혜도,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사업 효과성, 지속 가능성 등을 담보
  - ※ 일부 시·군에서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역량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의 시설을 조성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바, 이러한 대규모 시설 조성은 지양
- [사업 통합화] 활성화 확대, 마중물, 기존 사업의 틈새지원형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사업 발굴
  - 효과가 높은 중앙부처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 국비확보·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로사항이 많은 틈새지원을 위한 사업 등
  - ※ 중앙부처의 국비확보사업과 연계, 후속 사업과 연계
- [실현가능성 제고 및 효과 극대화] 타당성, 운영관리 담보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업의 추진
  - 건축물, 시설물 조성 후 시군의 재정압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업은 지양
  - 수혜의 혜택 대상이 지역주민에 한정하고, 운영관리를 위한 주체 육성 필수
  - ※ 관광 시설조성사업, 지자체에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가능한 사업, 운영관리 미확보 사업,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등은 지양
- [사전 관계자 의견수렴 이행 철저] 발굴된 사업은 전문가, 도의원, 균형발전위원, 충남도 관련의견을 반드시 반영
  - 주어진 제안서의 의견수렴에 기재

## 2) 제안서 검토 원칙

- [주제 명확화] 제안선 전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제(Theme)-사업(Program)-성과(Outcome)가 일체화 되어야 하며, 관련 사업간은 내용적으로 연계
  - 기존의 계획은 시군별 주제성 모호, 현황 - 구상 - 사업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백화점나열식 사업 계획, 현안사업 중심의 사업계획 등의 비판을 받음
  - 지역균형발전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 및 주제 설정
- [차별성 확보] 기존 추진사업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틈새지원 및 패키지형의 통합 지원 지향
  - 타부처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중앙부처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
  - 현황 및 여건에서 타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전체사업구조의 연계성
- [사업추진의 정당성 확보] 절차적 합리성에 기반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사업의 정당성 확보
  - 단계별(방향설정, 사업플 작성, 사업선정) 의견수렴 철저
  - 의견수렴 대상의 확대
    - ※ 필수 의견 수렴 대상 : 시장·군수, 도의원, 행정, 사업추진 관련 조직, 전문가 등
    - ※ 권장 : 일반 주민(설문조사 등 간접적 의견수렴 절차 강구)
  - 계획수립 절차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주민의 민원 발생사업, 민원발생 가능사업 사전 해소
- [실행가능성 제고] 사업 지연변경의 원인 해소를 위해 계획의 구체성 확보
  - 주요 내역이 물리적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추진주체의 역량활동이 매우 중요
  - 사업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추진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추진내용과 연계구조에 대한 구체성이 요구됨
  - 추진주체의 다양화, 추진방법·추진주체의 명확화, 의사결정 추진체계의 명확화, 추진가능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연계
    - ※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이 되는 사업은 배제 - 사전타당성 검증,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가능)사업만 시행

- [사업효과성 고려]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 한정된 재원내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극대화와 더불어 후속 추진을 담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마중물 성격의 준비된 사업이어야지만 그 효과를 거양
  - 또한 사업추진 기간중에 정형화된 모니터링과 평가가 요구됨
  - 발전목표 및 성과목표의 설정, 모니터링·평가 체계의 내실화
  
- [지속가능성 담보] 공공-민간의 협조체제 구축운영 및 후속 재원 투입
  - 사업 이후 사업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역량 확보와 사업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고,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지자체의 재원투입이 담보 되어야 함
  - 산업적 접근시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은 매우 미흡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민간의 공동 협조체제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려
  - 계획의 내용은 계획수립 후 시공단계까지 공공의 역량강화와 민간의 사업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사업구성의 연계·후속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추진체제의 다양화, 공공-민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 [추진체계 명확화] 총괄부서(팀)-사업부서(팀)간의 협업체제 구축 및 이해 관계자간의 역할분담 명확화
  - 사업계획의 구체화타당성 확보 및 향후, 모니터링, 평가대비 부서간 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제 구축
  - ※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취합하는 부서가 아닌 기획·총괄·진행·모니터링·평가 등 사업 추진의 전반을 이끌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
  
- [계획 형태] 지역발전(개발)방식과 산업·작문·문화·복지적 접근 보완
  - 지역발전형식에 기반하되 산업(클러스터)적 접근·문화·복지적 접근에 의한 지원기능을 종합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이 있음
  -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요 분야의 발굴, 수요의 적정성 검토, 기능간 연계구도 설정
  
- [재원분담 비율] 지방비의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은 5:5를 유지하며, 지특사업과 순도비사업간의 도비 전환보완 금지
  - 국비사업의 완결을 위하여 부족한 지방비를 보완하기 위한 순도비의 전환 불가

## 5. 추진절차

제안서 가이드라인 설명회	충남도	○ 제안서 신청서 가이드라인 설명회(충남도)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컨설팅	사군	○ 전문가, 도의원, 도 관련 실과의 의견 수렴 ○ 기본방향, 사업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컨설팅
제안서 신청서 작성 및 사업 신청	사군	○ 제안서 작성 ○ 사업추진조직, 이해관계자 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성 사전 검토	충남도	○ 제안서 사업성 사전 검토
사업성 검토 및 정부 예산 확보	충남도	○ 신규사업 반영 ○ 예산 신청(사군→도→중앙부처)

〈 限 2017년 4월 〉

개발계획, 시행계획 컨설팅	충남도, 사군 충남연	○ 사업계획 구체화, 연차별 추진계획 등 컨설팅
개발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사군 〈관련기관부서협의〉	○ 균형발전 개발계획시행계획 수립 ○ 사군 균형발전사업계획 승인 요청
사업성 사전 검토	충남도	○ 개발계획, 시행계획 사업상적정성 사전 검토
개발계획,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충남도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 개발계획시행계획 승인

〈 限 2017년 11월 〉

사업 시행		○ 추진상황 점검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 사후관리, 이행 점검

## 6. 지원대상 시군별 사업 추진 방향

### 1) 공주시

구분		2008	2014	증감	비고	
계		순위	82	77	5	
인구	연평균 인구증가율	값	-0.01	-0.77	-0.76	급격한 하락 추세
		순위	83	137	-54	
	고령인구율	값	17.32	19.31	1.99	고려 대상
		순위	81	79	2	
	조출생률	값	7.10	6.20	-0.90	
		순위	112	110	2	
산업	사업체수	값	8,111	8,213	102	
		순위	63	64	-1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값		0.99	-	창업률 제고 시급
		순위		146	-	
	고용기회	값	65.70	58.39	-7.31	고용률 제고 노력
		순위	86	63	23	
재정	1인당지방소득세	값	32.86	133.47		
		순위	55	41	14	
	재정자립도	값	17.46	17.50	0.04	
		순위	94	89	5	
교육	공교육기반	값	0.06	0.06	-	
		순위	104	90	14	
	사교육기반	값	1.98	1.19	-	
		순위	77	72	5	
의료	의료인수	값	1.13	5.54	-	
		순위	43	45	-2	
	병상수	값	2.90	28.64	-	
		순위	29	6	23	
복지	아동복지기반	값	5.32	21.79	-	
		순위	72	29	43	
	노인복지기반	값	19.01	0.47	-	급격한 하락
		순위	76	113	-37	
문화체육	문화시설	값	0.10	16.00	15.90	
		순위	28	21	7	
	마을체육시설	값	0.45	0.40	-0.05	
		순위	100	85	15	

주1) 전국대비 하위 30%는 음영처리

주2) 증감의 + : 개선, - : 악화

추진  
방향

- 인구 증가를 위한 젊은 층의 유입
- 사업체 증가(창업, 지역일자리, 종사자(고용률), 임금) 및 기존 사업체의 규모화법인화
- 노인복지 기반으로 하는 소득수준 향상 방안 마련 및 서비스 효율화

## 2) 보령시

구분		2008	2014	증감	비고		
계		순위	102	101	1		
인구	연평균 인구증가율	값	-0.01	-0.40	-0.39	급격한 하락 추세	
		순위	78	119	-41		
	고령인구율	값	17.22	20.14	-2.92	고령화율 지속 증가	
		순위	79	86	-7		
	조출생률	값	7.93	6.10	-1.83	청년층 출산률 지속 감소	
		순위	86	115	-29		
산업	사업체수	값	7,739	8,056	317	사업체증가율 하위	
		순위	67	66	1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값		2.48	-		
		순위		113	-		
	고용기회	값	60.89	50.23	-10.66		지속 하락 추세
		순위	98	103	-5		
재정	1인당지방소득세	값	24.16	80.29			
		순위	89	92	-3		
	재정자립도	값	21.71	19.70	-2.01		
		순위	76	77	-1		
교육	공교육기반	값	0.09	0.09	-		
		순위	65	64	1		
	사교육기반	값	1.76	1.35	-0.41		
		순위	91	58	33		
의료	의료인수	값	0.66	4.22	-		
		순위	69	76	-7		
	병상수	값	0.87	12.32	-		
		순위	85	70	15		
복지	아동복지기반	값	4.60	14.89	-		
		순위	104	96	8		
	노인복지기반	값	18.63	0.67	-		
		순위	79	65	14		
문화 체육	문화시설/천명	값	0.05	8.00	7.95		
		순위	93	59	34		
	마을체육시설	값	0.41	0.27	-0.14		
		순위	115	113	2		

주1) 전국대비 하위 30%는 음영처리

주2) 증감의 + : 개선, - : 악화

추진  
방향

- 인구 증가를 위한 젊은 층의 유입
- 사업체 증가(창업, 지역일자리, 종사자(고용률), 임금) 및 기존 사업체의 규모화법인화
- 주민의 체감도를 고려한 마을 체육시설등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서비스 효율화

### 3) 논산시

구분		2008	2014	증감	비고
계		순위 89	103	-14	
인구	연평균 인구증가율	값 -0.01	-0.74	-0.73	전국순위 하락
		순위 100	135	-35	
	고령인구율	값 18.69	20.95	-2.26	전국순위 하락
		순위 93	89	4	
	조출생률	값 7.50	6.40	-1.10	전국순위 하락
		순위 100	103	-3	
산업	사업체수	값 9,300	9,719	419	사업체 증가 중점 고려
		순위 54	57	-3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값	2.48	-	
		순위	114	-	
	고용기회	값 66.58	54.16	-12.42	
		순위 82	85	-3	
재정	1인당지방소득세	값 22.88	76.42	-	순위 하락
		순위 98	101	-3	
	재정자립도	값 16.35	16.10	-0.25	
		순위 100	94	6	
교육	공교육기반	값 0.11	0.11	-	
		순위 51	50	1	
	사교육기반	값 1.83	0.90	-0.93	
		순위 88	110	-22	
의료	의료인수	값 1.08	6.24	5.16	
		순위 46	27	19	
	병상수	값 1.82	19.08	-	
		순위 51	28	23	
복지	아동복지기반	값 6.85	21.09	-	
		순위 15	32	-17	
	노인복지기반	값 19.64	0.90	-	
		순위 74	40	34	
문화 체육	문화시설/천명	값 0.02	7.00	6.98	순위 하락
		순위 144	80	64	
	마을체육시설	값 0.51	0.22	-0.29	
		순위 81	124	-43	

주1) 전국대비 하위 30%는 음영처리

주2) 증감의 + : 개선, - : 악화

추진  
방향

- 인구 증가를 위한 젊은 층의 유입 및 조출생률 제고
- 사업체 증가율 제고를 위한 사업체의 창업활동 확대 지원(농업, 서비스업 종사자의 증가 유도)

#### 4) 금산군

구분		2008	2014	증감	비고
계		순위 99	109	-10	
인구	연평균 인구증가율	값 -0.01	-0.23	-0.22	순위 소폭 하락
		순위 106	109	-3	
	고령인구율	값 22.28	24.66	-2.38	순위 소폭 하락
		순위 114	114	0	
	조출생률	값 8.16	6.40	-1.76	순위 소폭 하락
		순위 81	103	-22	
산업	사업체수	값 4,682	5,036	354	
		순위 94	92	2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값	3.39	-	
		순위	88	-	
	고용기회	값 84.54	72.21	-12.32	
		순위 7	7	-	
재정	1인당지방소득세	값 23.71	150.13	-	
		순위 94	33	61	
	재정자립도	값 21.02	18.00	-3.02	
		순위 79	88	-9	
교육	공교육기반	값 0.05	0.04	0.01	교육기반 확충 절실
		순위 111	121	-10	
	사교육기반	값 1.25	0.56	-0.69	
		순위 135	149	-14	
의료	의료인수	값 0.37	4.87	-	
		순위 98	60	38	
	병상수	값 0.81	13.66	-	
		순위 89	54	35	
복지	아동복지기반	값 5.68	16.10	-	순위 하락
		순위 54	77	-23	
	노인복지기반	값 22.94	0.45	-	
		순위 53	118	-65	
문화 체육	문화시설/천명	값 0.05	10.00	9.95	딜리버리 서비스 효율성 제고
		순위 78	45	33	
	마을체육시설	값 0.37	0.29	-0.08	
		순위 125	106	19	

주1) 전국대비 하위 30%는 음영처리

주2) 증감의 + : 개선, - : 악화

추진  
방향

- 인구 증가를 위한 젊은 층의 유입 및 조출생률 제고
- 인삼약초 등 특화산업 지원
- 노인층, 학령층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 필요
  - 노인층 : 문화복지교육 딜리버리서비스 제고
  - 학령층 : 젊은층의 교육문제로 인구이탈 현상 방지를 위한 고품격 교육환경 마련

## 5) 부여군

구분		2008	2014	증감	비고	
계		순위	132	128	4	
인구	연평균 인구증가율	값	-0.02	-0.83	-0.81	정체
		순위	140	140	-	
	고령인구율	값	23.96	26.92	-2.96	정체
		순위	127	125	2	
	조출생률	값	6.10	4.80	-1.30	정체
		순위	142	146	-4	
산업	사업체수	값	4,694	4,819	125	농업중심의 사업체 증가
		순위	93	93	-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값		1.27	-	
		순위		140	-	
	고용기회	값	75.42	57.17	-18.25	
		순위	40	69	-29	
재정	1인당지방소득세	값	19.49	91.16	-	인구 감소, 사업체 영세성에 극복 필요
		순위	116	70	46	
	재정자립도	값	13.73	11.30	-2.43	
		순위	117	136	-19	
교육	공교육기반	값	0.07	0.07	-	사교육 제고 검토 필요
		순위	86	84	2	
	사교육기반	값	1.46	0.90	-0.56	
		순위	113	110	3	
의료	의료인수	값	0.41	4.11	-	
		순위	92	84	8	
	병상수	값	1.22	18.07	-	
		순위	75	34	41	
복지	아동복지기반	값	4.98	15.43	-	
		순위	81	86	-5	
	노인복지기반	값	24.49	0.73	-	
		순위	43	61	-18	
문화 체육	문화시설/천명	값	0.04	7.00	6.96	
		순위	105	80	25	
	마을체육시설	값	0.29	0.68	0.39	
		순위	148	49	99	

주1) 전국대비 하위 30%는 음영처리

주2) 증감의 + : 개선, - : 악화

추진  
방향

- 인구 증가를 위한 젊은 층의 유입 및 조출생률 제고
- 고령자중심, 사업체 영세성 극복을 위한 사업체 역량 제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클러스터 육성사업 확대, 기존 사업체 수익 제고방안 마련

## 6) 서천군

구분		2008	2014	증감	비고	
계		순위	140	137	3	
인구	연평균 인구증가율	값	-0.02	-0.65	-0.63	정체
		순위	141	130	11	
	고령인구율	값	25.27	28.94	-3.67	정체
		순위	131	136	-5	
	조출생률	값	6.00	5.10	-0.90	정체
		순위	144	143	1	
산업	사업체수	값	4,425	4,505	80	
		순위	98	97	1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값		1.53	-	
		순위		132	-	
	고용기회	값	72.89	58.92	-13.97	
		순위	56	58	-2	
재정	1인당지방소득세	값	18.92	78.05		순위 상승 추세
		순위	119	97	22	
	재정자립도	값	12.43	12.20	-0.23	
		순위	130	125	5	
교육	공교육기반	값	0.10	0.09	-0.01	
		순위	62	61	1	
	사교육기반	값	1.67	1.15	-0.52	
		순위	98	78	20	
의료	의료인수	값	0.29	5.20	-	
		순위	109	56	53	
	병상수	값	1.01	20.23	-	
		순위	82	22	60	
복지	아동복지기반	값	5.84	16.73	-	
		순위	47	68	-21	
	노인복지기반	값	18.38	0.92	-	
		순위	87	37	50	
문화 체육	문화시설	값	0.05	4.00	-3.95	
		순위	88	140	-52	
	마을체육시설	값	0.43	0.29	-0.14	
		순위	108	104	4	

주1) 전국대비 하위 30%는 음영처리

주2) 증감의 + : 개선, - : 악화

추진  
방향

- 군산시로의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해 산업 유치(장항국가산단) 적극 추진, 젊은층의 유입을 위한 서비스 관련분야의 지속 확충
- 장항국가산단, 사업체 창업률 제고 확대, 기존 일자라·창업·고용 등 경제관련 사업 통합화
- 문화시설 보급률 제고 노력 필요

## 7) 청양군

구분		2008	2014	증감	비고	
계		순위	130	132	-2	
인구	연평균 인구증가율	값	-0.02	0.20	0.18	젊은층 유치 노력 필요
		순위	147	73	74	
	고령인구율	값	27.35	30.18	-2.83	지속 증가
		순위	143	144	-1	
	조출생률	값	6.62	6.40	0.22	신생아 출생률 제고 노력
		순위	126	103	23	
산업	사업체수	값	2,112	2,294	182	6차 산업화, 서비스산업 제고 필요
		순위	148	142	6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	값		3.26		
		순위		93		
	고용기회	값	88.18	69.09	-19.09	
		순위	5	13	-8	
재정	1인당지방소득세	값	20.07	64.16	44.09	사업체 영세성 극복 노력
		순위	111	117	-6	
	재정자립도	값	15.20	13.00	2.20	사업체의 규모화
		순위	105	116	-11	
교육	공교육기반	값	0.05	0.04	0.01	학령기 인구 교육 고품격화
		순위	119	116	3	
	사교육기반	값	1.09	0.75	0.34	
		순위	147	132	15	
의료	의료인수	값	0.11	4.20	-	
		순위	141	78	63	
	병상수	값	0.15	7.14	-	
		순위	146	120	26	
복지	아동복지기반	값	7.00	20.79	-	
		순위	12	35	-23	
	노인복지기반	값	31.41	0.63	-	노인복지 수요 충족 노력
		순위	13	75	-62	
문화 체육	문화시설/천명	값	0.06	3.00	-	문화시설 개수, 프로그램 지속 확대
		순위	70	153	-83	
	마을체육시설	값	0.30	0.72	-	
		순위	142	46	96	

주1) 전국대비 하위 30%는 음영처리

주2) 증감의 + : 개선, - : 악화

추진  
방향

- 젊은층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간의 통합 추진  
→ 귀농귀촌사업의 검토 및 확대, 고추, 구기자 등 특화산업의 클러스터적 접근에 의한 진단 및 확대
- 고령인구의 문화복지서비스 제고(딜리버리서비스)

## 8) 태안군

구분		2008	2014	증감	비고	
계		순위	115	131	-16	
인구	연평균인구증가율	값	-0.00	-0.09	-0.09	인구 증가 고려
		순위	63	99	-36	
	고령인구율	값	20.16	24.39	-4.23	고령인구 > 경제활동인구
		순위	102	111	-9	
	조출생률	값	6.96	6.10	-0.86	고려
		순위	119	115	4	
산업	사업체기반	값	4,851	5,389	538	사업체 증가세
		순위	91	87	4	
	연평균사업체증가율	값		5.27	-	
		순위		43	-	
	고용기회	값	71.81	56.16	-15.64	고용기회 순위 하락<고려>
		순위	63	79	-16	
소득	1인당소득세할주민세	값	28.97	79.94	-	사업체 영세성 극복
		순위	66	95	-29	
	재정자립도	값	21.66	18.50	-3.16	법인화 등 규모화 고려
		순위	77	83	-6	
교육	공교육기반	값	0.07	0.06	0.01	신규 투자 정체
		순위	83	93	-10	
	사교육기반	값	0.96	0.77	0.19	공교육 대비 실태 조사 필요
		순위	155	128	27	
의료	의료인수	값	0.30	3.77	-	
		순위	106	107	-1	
	병상수	값	0.49	8.44	-	
		순위	118	104	14	
복지	아동복지	값	3.29	13.44	-	서비스 효율화
		순위	150	114	36	
	노인복지	값	15.57	0.44	-	서비스 효율화
		순위	103	120	-17	
문화체육	문화시설	값	0.06	6.00	-	접근성 개선서비스 효율화
		순위	67	98	-31	
	마을체육시설	값	0.35	0.11	-	접근성 개선서비스 효율화
		순위	133	152	-19	

주1) 전국대비 하위 30%는 음영처리

주2) 증감의 + : 개선, - : 악화

추진  
방향

- 젊은층 유입
- 사업체 증가(창업, 일자리, 종사자 고용률, 임금) 등 전반 제고
- 기존 사업체의 규모화·법인화

## 04 제안서 작성 방법

### 1. 제안서(안) 목차

####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2. 계획의 범위
3. 계획의 성격
4. 추진경위 및 방법

#### II.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 검토

1. 지역의 현황 및 개발여건
  - 1) 지역의 일반현황
  - 2) 본 사업 관련 사항의 현황 및 개발여건
2. 관련 계획 및 사업 검토
  - 1) 상위관련계획 검토(법정계획, 관련계획 등)
  - 2) 관련 사업 검토
3. 지역 수요
  - 1) 일반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 2) 전문가
  - 3) 사업 이해관계자

4. 격차분석 및 진단
5.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Ⅲ. 기본구상

1. 비전 및 발전목표
2. 추진 전략 및 성과 목표 설정
3. 사업간·기능간·공간간 연계도 및 종합구상도
4. 사업발굴 및 추진계획

### Ⅳ. 사업계획

#### 1-n. 사업계획 및 연계·후속사업

- 1) 사업 개요
  -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
- 2) 필요성 및 목적
- 3) 추진 경위
- 4 현황 및 개발여건
  - 대상지 현황, 관련계획·사업, 관련 법규, 관련 주체 현황
- 5) 추진방향(기본구상)
  - 비전, 목표, 전략
- 6) 성과목표
- 7) 세부사업내역
  - 기능, 시설·프로그램 세부내역
  - 추진방식, 추진주체, 운영주체
- 8) 운영관리계획
  - 시설사업(운영계획서, 수익·비용)

- 프로그램(수익모델, 수익발생 및 운영 등)

9) 연계 및 후속 사업계획

- 연계 사업 : 현재 추진중계획중 사업과의 연계계획

- 후속 사업 : 사업 완료 후 자체사업, 국비 확보, 공모사업 등

10) 투자계획

- 세부사업별 산출근거 포함

- 대상 : 균형발전사업 + 연계사업 + 후속사업

V. 투자 및 관리계획

1. 투자 계획

2.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3.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VI. 기대 효과

1) 정량적 파급효과

2) 정성적 파급효과

## 2. 제안서 작성방법

### 1.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 목적 : 내용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요약함으로서 전체 내용 파악
- 방법
  - 사업 추진의 배경, 필요성, 당위성, 충청남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부합성에 대한 목적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술

#### 2. 계획의 범위

- 목적 : 계획의 범위를 요약하여 제시
- 방법 : 계획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를 기술
  - 시간적 범위 : 사업추진의 완료성을 감안,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한정 (2018-2020)
  - 공간적 범위 : 시·군 전체 및 일부
  - 내용적 범위 : 추진코자 하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 3. 계획의 성격

- 목적 : 본 계획의 성격, 위상,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계획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제시
- 방법
  - 본 계획이 이 해당 시·군 지역발전계획으로서의 성격, 위상(상위·관련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상호 관계상의 위상), 역할(마중물, 선도, 완성 등) 등을 제시

#### 4. 추진경위 및 방법

- 목적 : 계획수립 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였는가를 판단
- 방법 :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과 추진경위를 기술
  - 추진경위
    - 준비 단계 : 추진의사관련 지자체내부의 의견 수렴과정
    - 계획수립 단계 :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 관련 전문가, 관련기관, 관련행정조직의 계획수립 관련 협의·의견수렴과정을 중심으로 기술
  - 추진방법 : 계획수립 전 과정(기초조사, 의견수렴, 관련 주체간 협의 및 합의, 의사결정)에서 수행한 내용에 대하여 요약 기술

## II. 지역 현황 및 여건 검토

### 1. 지역 현황

#### (1) 지역 일반 현황

#### (2) 본 사업 관련 현황 및 여건

- 목적 : 본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구상,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 및 여건 분석
  - 방법 : 경쟁력, 차별성,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중심으로 기술(백화점식 일반적 사항의 나열은 지양)
    - 지역 현황
      - 지역의 현안과 해결필요성 등 선정·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관련분야별 현황(예시, 경제, 삶의질 관련도 동일)
      -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견주어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 및 산업적 특성 중심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기술
      - 추진코자 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추진코자 하는 사업 대비 선택적으로 기술하되, 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 예)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다분야에 대해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생산-가공-물류·유통·정보통신-마케팅·홍보-연구-기업지원-인력양성-네트워킹-문화복지지원 등)

### 2.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1) 상위·관련계획 현황(법정계획, 관련계획등)

#### (2) 관련 사업 검토

- 목적 :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를 파악하고, 연계·복합화의 가능성과 선순환을 고려한 전체를 진단하기 위함
- 방법
  - 관련계획 :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본 사업에 미치는 함의 및 수용방향 등을 기술 (계획 위계별 표로 정리)
    - 지역현황 대비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상 정리 평가
    - 법정계획과의 관련성 및 추진근거 제시
    - 비법정계획의 경우, 지자체의 노력 정도(구상-계획-공사(시행) 등)를 제시
  - 관련사업
    - 순환체계상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관련사업을 요약 정리
    - 완료·진행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보완 필요성, 보완 방향을 기술하고, 기 추진 지역과 본 시범사업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기술
    - 특히, 본 사업이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과의 중복성, 차별성을 갖기 위한 관련 사업의 검토

※ 상위 및 관련계획은 부록 참조

### 3. 지역 수요

#### (1) 일반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 (2) 전문가

#### (3) 사업 이해관계자

- 목적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그 과정이 객관적이었는가를 판단
- 방법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의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지역전문가에 대한 시군의 균형발전방향, 사업추진 의견 등을 기술
  - 관련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수요 파악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도출을 효과적으로 하였는지 제시
  - 사업과 관련된 전문 민간 컨설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 사업추진과 관련된 충청남도 관련 실과의 의견 제시
  - 수요를 조사하는 방법은 설문조사,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협의회 등 지자체가 자유롭게 선택
- ※ 필수 사항 :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의원, 전문가), 지역전문가, 사업관련 충청남도 관련 실과, 지역주민 설문조사

### 4. 격차분석 및 진단

- 목적 : 지역의 지역발전수준 분석 및 삶의 질 지수를 통해 해당 시·군의 낙후도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진단  
삶의 질 지표와 관련하여 전국 하위 30% 이하 관련 지표는 사업계획과 반드시 연동
- 방법 :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지수(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비교대상은 충청남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전국 유사 시군을 비교
- ※ 기 배포한 지역발전지수 전국 비교 참조

### 5.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1) 계획분야별 현황 및 개선과제

#### 2) SWOT 분석

#### 3) 계획과제 도출

- 목적 : 본 계획의 종합적인 분석과 계획과제 도출
- 방법 : 추진코자하는 사업에 분야별 현황(장단점), 개선과제를 제시  
SWOT 분석 및 계획과제는 도식화하여 기술

- SWOT분석 : 지역 내 특화산업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계획과제 도출 : 현황 및 개발여건, 지역발전도, 지역수요를 감안하고,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상위·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하되, 뒤에서 제시되는 기본구상과도 내용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 Ⅲ. 기본구상

- 목적 : 시군 균형발전 계획의 기본 틀로서 대상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되, 국가·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목적과 부합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해야 함
- 방법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바탕을 둔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구체화하여야 함
  - 상위·관련계획 연계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작성
  - 성과목표,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및 단위사업 발굴
  - 복합·융합 및 연계를 위한 기본구도 및 추진방법을 도식화하여 제시

#### 1. 비전 및 발전목표

- 고려사항 : 논리적 일관성, 내용적 연계성 고려하고, 목표는 사업기간내의 달성도를 고려하여야 함
- 방법
  - 비전
    -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상을 종합·압축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여 표현
    - 비전에 대한 시군의 인지도가 높게 설정하되, 비전-목표설정을 위해 행정 또는 용역수립팀의 단독에 의거한 설정을 지양하고, 다자가 참여하는 비전체계를 제시
  - 발전목표
    - SWOT 분석결과와 도출된 계획과제 등을 바탕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 및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술
    - 제시된 목표별로는 도달점·성과를 제시하되, 시·군 발전계획 등 다른 관련계획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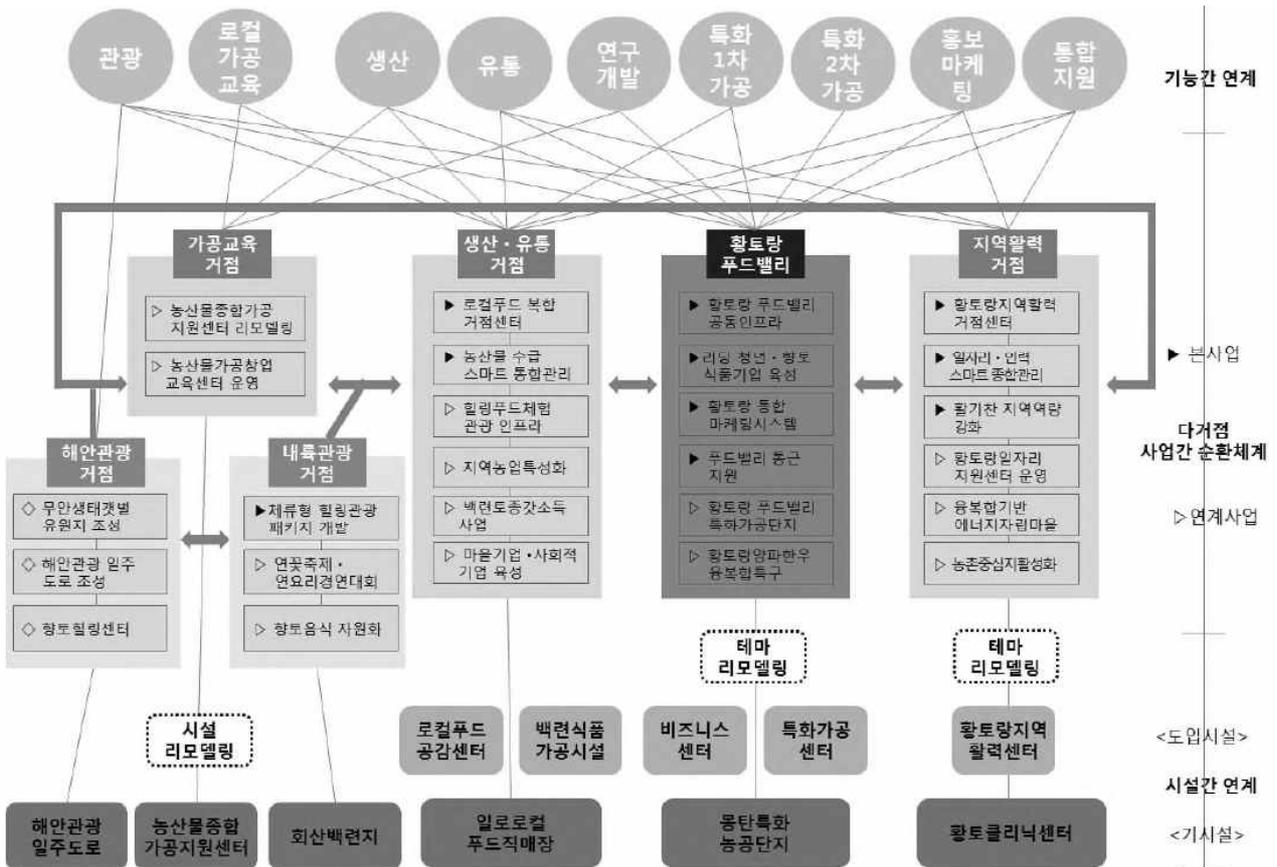
## 2. 추진 전략 및 성과 목표 설정

- 고려사항 : 목표별, 분야별, 사업아이템별, 추진단계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업기간내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지표를 제시
- 방법
  - 추진전략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는 사업계획과 연결토록 구성
    - 실제 사업대상지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사업
    - 추진전략별 본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 ※ 본 사업외에 시군에서 동시 추진하는 사업을 제시
  - 성과목표
    - 전략별 사업 추진에 따라 이룰 수 있는 직접적인 성과 목표를 정량·정성으로 구분하여 제시
    - 성과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적·환경적 지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 성과목표년도는 사업종료년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지표와 증가율**을 제시
- ※ 성과목표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도달코자 하는 실제 목표치로, 모니터링·평가와 연동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 3. 사업간·기능간·공간간 연계도 및 종합구상도

- 목적 : 하나의 목적과 방향성을 담보하고, **백화점 나열식, 현안사업 중심으로 추진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사업과 사업간은 내용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방법적 측면에서 복합·융합·연계 되어 사업간의 시너지 정도 파악
- 도입기능 및 주변 사업간 연계도 : 주요핵심사업과 주변 사업간의 연계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함
- 방법
  - 본 사업은 공간에 입지하는 사업 외에 비물적 사업을 감안하여, 이를 개념화하여 제시
  - 본 사업과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구조도를 도식화하여 제시
  - 공간적 스케일을 감안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적인 사업내용의 체계를 파악토록 개념화하여 제시

<예시>



#### 4. 사업발굴 및 추진계획

##### 1) 사업발굴

- 목적 :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담보를 위한 절차와 내용을 제시
  - 방법
    - 사업발굴·선정과정상의 절차를 요약 기술
    - 사업선정기준 기준, 원칙을 제시하고, 선정방법, 참여자를 간략하게 기술
    - 사업발굴 및 선정의 방법은 퍼실리테이션 기법 적용, 간담회, 워크숍 등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시행
    - 특히, 예비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의 사업부서와 충청남도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성·연계성을 반드시 검토
- ※ 필요시 증빙자료 제시

## 2) 추진계획

- 목적 : 본 사업과 연계·후속사업간의 연차별 연관구조를 제시
- 방법 - 사업구분기준은 목표(전략)별로 제시하되 선착수 가능사업을 고려  
- 사업계획(사업꾸러미)의 세부사업별 공정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연계·후속사업과의 구조도 제시

### 예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매년	
1-1. 농산물가공 R&D 센터	수요조사	컨설팅	설계	시공	운영	
1-1. 6차산업 가공품 안테나숍			입점 추진	시공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1-2. 매실 와인 트레인	타부처 협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홍보 마케팅(지속)	만족도 조사
1-2. 매실 테마파크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2-1. 로컬푸드 직거래센터	수요조사	설계	시공	운영		의견조사
2-1. 진상장터~진상역 환경개선	계획 및 설계	보수 및 시설공사	운영			의견조사
2-2. 도농교류체험관	컨설팅	설계	시공	운영		만족도 조사
- 6차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창업지원교육 및 관리 계획	운영			의견조사
- 6차산업 추진체계구축		운영조직 구성	네트워크 구축 운영			
1-2. 매실의 지역브랜드 (표준화·규격화, 공동R&D)	컨설팅	참여업체 발굴	네트워크 구축 운영	홍보 마케팅(지속)		
2-1. 진상역 관광인프라 구축	타부처 협의	컨설팅	운영	홍보 마케팅	만족도 조사	
2-2. 영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발굴	교육자 양성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구축		의견조사	
2-2. 시니어빌리지		운영조직 구성	사업계획			

## IV. 사업계획

- 목적 : 사업의 취지 부합성, 경쟁력,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도록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
  - 방법
    - 제시된 기본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은 상위 비전체계(비전-목표-추진전략)에 맞추어서 논리적으로 정합되어야 하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가 복합된 꾸러미 형태로 계획
    - 사업 추진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 관련 사업과 연계
  - 작성시 고려사항
    - 설정한 비전체계(비전-목표-전략)과 내용적으로 논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지역 주민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측정가능한 지표로 표현되어야 함
- ※ 원칙 : 철저한 사전타당성 검증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완료 또는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 관련 자료는 증빙서류로 제출

### 〈고려요인〉

- 지특회계 지원대상사업 여부
-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
- 현재 집행 가능성 여부
-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여부
- 추진주체의 확실성 및 운영·관리 가능성 여부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사업
- 민자유치 수반사업은 전체 투자계획 전제하되, 관련 계획 함께 제시
- 시설운영계획서 작성 및 사전 평가 전제

## l-n. 사업계획

1)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표로 제시</li> </ul>
2) 필요성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의 필요성, 목적을 핵심사항 중심으로 제시</li> </ul>
3) 추진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되었던 경위를 시차별, 내용별로 제시</li> </ul>
4 현황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 현황, 관련계획·사업 추진현황, 관련 주체 현황 등을 제시</li> </ul>
5) 추진방향(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기술</li> <li>※ <b>사업별 추진방향은 전체사업의 비전체계(목표-추진전략)과 논리적으로 정합되어야 함</b></li> </ul>
6)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적목표(Output)와 성과목표(Outcome)를 정량화한 형태로 제시</li> <li>※ <b>현재 상태를 반드시 제시</b></li> </ul>
7) 세부사업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W, SW, HnW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li> <li>◦ HW사업의 경우 기능·시설, 규모, 사업비, 운영방식, 추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li> <li>◦ SW사업의 경우, 사업특성별 대상, 물량, 지원내역, 주체, 시기 등을 제시</li> <li>◦ HnW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관리 및 지역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li> <li>※ <b>각 세부내역별 산출내역 제시</b></li> </ul>
8) 운영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식, 추진주체, 운영주체를 기술</li> <li>◦ HW사업은 운영계획서 작성(운영주체, 운영수익과 비용 등 포함)</li> <li>◦ SW사업은 자립화 계획 작성(사업 수익모델, 수익발생 및 운영 등)</li> <li>◦ 사업간 연계방안(타사업과의 연계방안 제시)</li> </ul>
9) 연계 및 후속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 사업 : 현재 추진중·계획중 사업과의 연계계획</li> <li>◦ 후속 사업 : 사업 완료후 국비 확보, 공모사업 등</li> </ul>
10) 투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균형발전사업 + 연계사업 + 후속사업</li> <li>◦ 세부내역별 자원별,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li> <li>※ <b>토지매입비는 별도의 시군비 부담</b></li> </ul>

## V. 투자 및 관리계획

### 1. 투자 계획

- 목적 : 투자금액의 적정성, 연계사업간의 정합성 검토 및 지속가능성 판단
- 방법
  - 전체사업을 포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사업과 연계사업을 재원별, 연차별로 작성
  - 재원별로는 국비, 지방비, 기타(민자유치, 자부담)
  - 관리계획은 운영, 관리 및 사업 시행주체, 추진방식을 제시
  - ※ 지특사업, 순도비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준수

### 2.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 목적 :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역할 제시
- 방법
  - 추진체계
    - 시군 총괄 추진부서에서 균형발전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추진체계 마련
    - 총괄부서 - 사업부서 - 전문가 -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내역, 운영방법, 운영내용, 참여 주체별 역할 등을 기술
  - 운영관리계획
    - 시설물 관리 및 활용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관리·운영 예산확보방안 등 제시
    - 사업추진시 사업시행 방법 및 운영관리주체를 기술(예, 직영, 민간·기관 위탁 등)

### 3.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목적 : 사업 추진시 실적 및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환류함으로써 사업성과 관리 가능여부를 판단
- 방법
  - 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 전문가 구성·운영 방안, 모니터링 방법 및 항목 등 효율적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추진계획 제시
  - 평가계획
    - 사업추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 제시
  - ※ 총괄부서에서 사업추진관련된 모니터링·평가를 담당하며, 사업부서외에 전문가, 사업이해관계자를 모니터링·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기행

## VI. 기대 효과

### 1. 정량적 파급효과

### 2. 정성적 파급효과

- 목적 : 본 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를 제시
- 방법
  - 본 사업 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기대효과, 정량적, 정성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 사업대상 지역과 주변 지역, 해당 지자체 내 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 기술

## 〈부록〉 충청남도 법정·비법정계획 목록

- 본 제안서와 관련성이 높은 계획은 음영 처리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1						충남형 도정홍보종합계획	비법정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 부	법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법정	지자 체장			
3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의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가 부	법정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의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법정	시도 지사			
4	청소년기본 법 제13조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가 부	법정	청소년기본 법 제14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법정	지자 체장			
5	건강가정기 본법 제15조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 획	여가 부	법정	건강가정기 본법 제16조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법정	지자 체장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법정
6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종합계획 수립연구	비법정				
7	경력단절여 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여가 부	법정	경력단절여 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법정	시도 지사			
8	양성평등기 본법 제7조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가 부	법정	양성평등기 본법 제8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법정	시도 지사			
9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 대책	여가 부	법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6 시행계획	법정	지자 체장			
10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3조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법정	지자 체장	지방재정 법 제33조	2016~20 20 중기지방 계획	법정
11	평생교육법 제9조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 본계획	교육 부	법정		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 계획	비법정				
11	평생교육법 제9조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 본계획	교육 부	법정	평생교육법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법정	시도 지사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교육 부	법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충청남도 소관분야 계획	법정	시도 지사			
13	국토기본법 제9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 부	법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 제5조, 제6조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법정	시도 지사			
14	국토기본법 제9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 부	법정	국토기본법 제13조	충청남도종합계획	법정	도지 사			
15	국토기본법 제9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토 부	법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 제5조, 제6조	내륙권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법정	시도 지사			
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 전 지원조례 제4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법정	도지 사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17						천안 아산 공주 신성장발전전략	비법정				
18	국가균형발 전특별법 제4조	지역발전5개년 계획	산자 부	법정	국가균형발 전 특별법 제7조	충청남도발전계획	법정	시도 지사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3차)	국토 부	법정							
20		지방하천정비사 업 종합계획	국토 부	비법정							
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고용 부	법정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비법정				
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고용 부	법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법정	시도 지사			
22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충청남도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비법정				
23						(연계) 2016년 충청남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비법정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중기 청	법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충청남도 전통시장 5개년 계획(시설/경영)	법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지역추진 계획	법정
25						충남 경제비전 2030	비법정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을 제7조	충청남도 산업입지수급계획 수정계획	법정				
27						(시행) 충청남도 농공단지종합관리지원 계획	비법정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제4조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산자 부	법정							
29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5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기본계획	산자 부	법정							
30	산업융합촉 진법 제5조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산자 부	법정							
31	산업기술혁 신촉진법 제5조	제6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산자 부	법정							
32	국제과학비 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본계획	미래 부	법정							
33	지식재산기 본법 제8조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특허 청	법정							
34	과학기술기 본법 제8조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 흥 종합계획	미래 부	법정		충남산업발전종합계획	비법정				
3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	제3차 과학기술 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미래 부	법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법정	시도 지사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초 연구진흥 종합계획	미래부	법정							
37						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비법정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역산업발전계획	산자부	법정		충남산업발전계획	비법정				
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역산업발전계획	산자부	법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2016년 충남지역 산업진흥계획	법정	시도지사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자부	법정							
41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	제12차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	산자부	법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도시가스 공급계획	법정	시도지사			
4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	산자부	법정	에너지법 제7조	충청남도 제4차 지역에너지 계획	법정	시도지사			
4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	산자부	법정		충남지역에너지종합계획(수정계획)	비법정				
4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위	법정							
4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연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산자부	법정							
4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미래부	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법정	시도지사			
47	전기사업법 제25조	(연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산자부	법정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연계)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산자부	법정							
49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위	비법정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법정				
50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	법정				
5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행자부	법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0조	2015년도 충청남도 자원봉사 진흥 시행계획	법정	지자체장			
52		지방세정보보호 연도별 추진계획	행자부	비법정							
53						환황해권 중심기틀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중장기 종합계획	비법정				
54						충청남도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계획	비법정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5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미래부	법정		2016년 충청남도 정보화 시행계획	법정				
56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문광부	비법정							
57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문광부	비법정							
5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문광부	법정							
59		제2차 문화기술(CT)R&D 기본계획	문광부	비법정							
60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문광부	법정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법정	지자체장			
61	도서관법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문광부	법정	도서관법 제15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법정	시도지사			
62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문화재 보전, 관리, 활용 5개년 기본계획	문화재청	법정	문화재 보호법 제7조	2016년도 충청남도 문화재보존 시행계획	법정	시도지사			
63						충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계획	비법정				
64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충청남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법정	지자체장			
66	관광기본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49조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문광부	법정	관광진흥법 제49조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법정	시도지사			
67	관광기본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49조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문광부	법정							
68	관광기본법 제3조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문광부	법정							
69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연계)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농림부	법정	식품산업진흥법	충청남도 식품산업육성 계획	법정	지자체장			
7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5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부	법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7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7조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법정
7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농림부	법정							
72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비법정				
73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	비법정				
74	여성농어업 인육성법 제5조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농림부	법정	여성농어업 인육성법 제5조	제4차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75	여성농어업 인육성법 제5조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농림부	법정	여성농어업 인육성법 제5조	2016년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법정	시도지사			
76	농어업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부	법정							
77						충남 농산물 유통 선진화 5개년 계획	비법정				
7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충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	법정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79						충남 과수산업발전계획	비법정				
80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대책	비법정				
81	중자산업법 제3조	중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	농림부	법정							
82	기능성장잠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차 양잠산업육성 5개년 계획	농림부	법정							
83						용,배수로 정비 증장기계획	비법정				
84	말산업육성 법 제5조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농림부	법정							
85						충남 축산정책 추진전략과 장기비전	비법정				
86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농림부	법정							
87						복지보건 증장기계획	비법정				
88						복지보건 증장기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비법정				
89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비법정				
90						제2차 충청남도 노인복지 5개년 계획	비법정				
9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보건부	법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충청남도 장사수급계획	법정	시도 지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역수급 계획	법정
92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제2차 증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부	법정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제3차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	법정	시도 지사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	법정
93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제2차 증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부	법정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9조	2016년도 보육 시행계획	법정	시도 지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계획	법정
94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부	법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	2016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법정	지자 체장			
95						행복출발 아동프로젝트 5개년 계획	비법정				
96	사회보장기 본법 제16조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 획	보건부	법정	사회보장기 본법 제19조	제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법정	시도 지사	사회보장 기본법 제19조	사회보장 에 관한 지역계획	법정
97	사회보장기 본법 제16조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 획	보건부	법정	사회보장기 본법 제19조	2016년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법정	시도 지사			
98	장애인복지 법 제10조의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보건부	법정		제2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비법정				
99	장애인복지 법 제10조의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보건부	법정		2016년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시행계획	비법정				
100	장애인 노인 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보건부	법정	장애인 노인 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차 충청남도 편의증진종합 5개년 계획	법정	주관 기관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10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부	법정							
102	한의학육성법 제6조	제3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보건부	법정	한의학육성법 제8조	제2차 한의학육성발전계획2014년 시행계획	법정	지자체장			
103					지역보건법	제6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정	시도지사			
104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식약처	법정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식품안전관리 2016년 시행계획 및 2015년 추진실적	법정	지자체장			
1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2	응급의료기본계획	보건부	법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2016년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법정	시도지사			
10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	제3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시행계획	식약처	법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	2016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시행계획	법정	지자체장			
107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환경부	법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1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법정	시도지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세부시행계획	법정
108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제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부	법정							
109						제1차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비법정				
1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	법정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3차 충청남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111	환경보건법 제6조	(연계) 환경보건종합계획	관련부처	법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4차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법정	시도지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환경보건계획	법정
112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	제1차 석면관리기본계획	환경부	법정	석면안전관리법 제6조	충청남도 석면관리시행계획	법정	시도지사			
113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대책	환경부	법정							
114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부	법정							
115	하천법 제23조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	국토부	법정							
1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	환경부	법정		행복한 삶의 공영 조성 2단계 계획	비법정				
117	지하수법 제6조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지하수법 제6조의2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법정	시도지사	지하수법 제6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필요시
118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토양보전 기본계획	환경부	법정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법정	시도지사			
1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국토부	법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법정
120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물환경관리 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환경부	법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법정
121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비법정				
122						(연계) 제1차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수정보완) 수립	비법정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123						(시행) 충청남도 주요 오염하천 수질개선 중장기계획	비법정				
124	수도법 제5조	2025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	환경부	법정	수도법 제6조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법정	시도지사	수도법 제6조	시행계획	법정
125	산지관리법 제3조의2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산림청	법정	산지관리법 제3조의2	제1차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계획	법정	시도지사			
1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차 산림기본계획	산림청	법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차 충청남도 지역산림계획	법정	지자체장			
1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차 산림기본계획	산림청	법정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	비법정				
1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차 산림기본계획	산림청	법정		울창하고 건강한 경제로임 육성계획	비법정				
12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시행) 숲길의 조성, 관리 기본계획	산림청	법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지방등산로 관리계획	법정	지자체장			
1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임도시설 기본계획	산림청	법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차 임도 설치계획	법정	시도지사			
131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132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	제4차 건설사업정보화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13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법정	지자체장			
13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연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법정	지자체장			
1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법정	시도지사			
136					건축기본법 제12조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137	주거기본법 제5조	2016년 주거종합계획	국토부	법정	주거기본법 제6조	충청남도주택종합계획	법정	시도지사			
138					경관법 제7조	충청남도경관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경관법 제7조	경관계획	법정
139	도로법 제5조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도로법 제6조	제2차 충청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도로법 제6조	도로건설 관리계획	필요시
140	도로법 제6조	(연계)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계획	국토부	법정							
14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	국토부	법정							
14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연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국토부	법정							
143	도로법	전국	국토	법정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국도병목지점 개량 5단계 기본계획	부								
144	교통안전법 제15조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교통안전법 제17조	제2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교통안전법 제17조	시군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법정
14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	제1차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국토부	법정							
14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부	법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법정
147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 제5조	제2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148	항공법 제89조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국토부	법정							
149	철도건설법 제4조	(시행)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법정							
15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시행) 제2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151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73조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152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6조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국토부	법정							
153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94조	제3차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	국토부	법정							
15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155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국토부	법정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충청남도 제1차 지역물류기본계획	법정	시도지사			
15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 3조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법정				
157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6조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충남 GIS기본계획	비법정				
158	국토기본법 제25조	국토조사 중기계획	국토부	법정							
159		국토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한 지리지발간 기본계획	국토부	비법정							
1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구축량수조사및지적예관한법을 제91조)	지명업무 정단기 추진계획	국토부	법정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161		지적제도 개선계획	국토부	비법정		충남 지적제도 개선계획	비법정				
162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4조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국토부	법정							
16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서해안비전 추진계획	비법정				
16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	(연계) 2016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해수부	법정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비법정				
165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	(연계) 2016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해수부	법정		충청남도 어업, 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비법정				
166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167	해양경관관리법 제24조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해양경관관리법 제24조	2016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	법정	시도 지사			
16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수부	법정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	비법정				
169	항만법 제5조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170	항만법 제51조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해수부	법정							
171	항만법 제41조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수부	법정							
172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비법정				
17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174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175	도서개발촉진법 제3조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해수부	법정		충청남도 도서발전종합계획	비법정				
176	연안관리법 제6조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수부	법정							
17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해수부	법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	법정	지사 체정			
178	내수면어업법 제5조	제3차 내수면어업발전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179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계획	해수부	비법정							
180		수산종묘관리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해수부	비법정							
181		2013년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해수부	비법정							
182	어촌어항법 제4조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연번	중앙				충청남도				시군		
	근거법	계획명	부처	의무	근거법	계획명	의무	수립권자	근거법	계획명	의무
183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2015년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해수부	법정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2015년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법정	시도지사			
184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선진화시행계획	법정	시도지사			
185		수산물수출진흥 종합대책	해수부	비법정							
186		수산물가공식품 산업 발전대책	해수부	비법정							
187		수산물 10대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2015년도 사업 추진계획	해수부	비법정							
188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7조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해수부	법정							
189					소방기본법 제9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소방차량 교체 5개년 계획	법정				
190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차 소방력 보강(5개년) 계획	법정				
19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확충 5개년 계획	법정				
192	소방기본법 제6조	제1차 소방업무 종합계획	방재청	법정	소방기본법 제6조	세부계획	법정	시도지사			
19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방재청	법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16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법정	소방본부장			
194		제9차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년 계획	방재청	비법정		충청남도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년 계획	비법정				
195		제9차 소방용수시설 보강 5개년 계획	방재청	비법정		2014년 충청남도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	비법정				
196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	농림부	비법정		2016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비법정				
197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비법정				
198						(연계) 충남 농촌지도사업 혁신 10개년 발전전략	비법정				
199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육성지원 5개년 계획	비법정				
20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	2016년 교육훈련계획	법정	교육기관장			

## 참고자료

충청남도, 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